

# 영상미디어센터 『씨네포럼』 논문심사 규정

1차 2010년 6월 26일 개정

2차 2012년 5월 31일 개정

3차 2015년 1월 15일 개정

4차 2015년 11월 15일 개정

## 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『씨네포럼』에 투고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편집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규정 심사)

- 1) 본 『씨네포럼』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.
- 2)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 논문의 영역과 게재의 적합성,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여부, 논문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, 해당 투고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한다.
- 4)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제4조에 적시된 심사기준과 절차를 거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
### 제3조(심사위원의 자격과 선정기준)

심사위원의 자격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1)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이 추천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그에 준하는 업적의 소지자여야 한다. 이 때 심사자의 전문성과 해당분야의 업적 여부가 심사위원 추천의 기본 조건이 된다. 논문심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항목 중 (1)과 (2) 각각에서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.

#### (1) 직위/자격요건

- 박사학위소지자
- 학교 근무자일 경우 전임강사 이상
-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로 2년 혹은 4년제 대학에서 관련 분야 교원으로 2년차 이상의 경력을 쌓은 자
-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관련 실무 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자

#### (2) 연구경력

- 최근 2년간 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 게재 혹은 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주관한 학술대회 발표를 기본으로 한다.
- 국내외 학술대회 최소 3회 이상 주제 발표 참여
- 국내외 학술지 최소 2회 이상 논문 게재

- 2) 심사위원 선정은 영화·영상·미디어관련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되 투고 논문 분야와 동일한 전공자를 위촉한다. 투고 논문 분야와 동일한 전공자가 없을 경우엔 외부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.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에 의해 추천된 논문심사자를 말하며, 심사위원으로 활용할 사람은 각 편집위원이 최소 3인 이상 추천한다.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

위촉될 수 있다.

- 3)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. 단,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이 나온 논문에 대한 재심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.
- 4)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시부터 게재 전까지의 모든 심사과정에 필요한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‘Double Blind’ 방식을 사용한다.
- 5) 심사위원은 영상미디어센터 『씨네포럼』 연구윤리규정 중 제5조 ‘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’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.

#### 제4조(심사기준과 기간)

- 1)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이 위촉한 3인의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.
- 2)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과 심사서 양식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심사위원에게 발송한다.
- 3)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,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.
- 4)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서에 제시된 9개의 논문평가항목(투고 논문의 영역과 게재의 적합성, 논문의 형식적인 요건, 논문의 학술적 수준, 논문에 사용된 개념 및 논리 전개의 적절성, 문장 표현의 수준, 논문 제목의 적절성, 논문 초록의 적절성, 참고문헌의 적절성, 논문의 학술적 기여도)을 참조하여 ‘게재가’, ‘수정 후 게재가’, ‘수정 후 재심사’, ‘게재 불가’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.
- 5) 심사위원의 판정에서 ‘게재가’는 총9개 항목 중 ‘아주 좋음’의 평가가 5항목 이상이어야 하고, ‘게재불가’는 5개 이상의 항목에서 ‘부적절함’과 ‘매우 부적절함’ 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.
- 6) ‘수정 후 게재가’, ‘수정 후 재심사’, ‘게재 불가’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,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평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정요구

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.

- 7)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‘게재가’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『씨네포럼』에 게재한다.
- 8)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‘수정 후 게재가’의 대상이 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1주일 내에 수정된 논문과 ‘수정사항 요약문 및 반론서’를 제출해야 한다.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 제출된 논문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 송부한다. 심사위원은 5일 이내에 재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수정 보완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했는지를 확인 한 후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- 9)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‘수정 후 재심사’의 대상이 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.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면밀히 검토 후 수정하여 다음 호에 다시 투고할 수 있다. 이때 해당 투고자의 심사료는 면제된다.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수정 보완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했는지를 확인 한 후 초심 때와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이를 전달한다. 심사위원 3인의 재심 판정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- 10)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‘게재 불가’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한 『씨네포럼』에 재응모할 수 없다.

#### 제5조(판정)

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종합한 심사결과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며, 심사 판정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1) 2명 이상이 게재가일 경우, 게재가로 판정

- 2) 2명 이상이 수정 후 게재가이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
- 3) 2명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이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
- 4) 2명 이상이 게재불가이면 게재불가로 판정
- 5) 1명이 게재가, 1명이 수정 후 게재가, 1명이 수정 후 재심사이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
- 6) 1명이 게재가, 1명이 수정 후 게재가, 1명이 게재불가이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
- 7) 1명이 게재가, 1명이 수정 후 재심사, 1명이 게재불가이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
- 8) 1명이 수정 후 게재가, 1명이 수정 후 재심사, 1명이 게재불가이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
- 9) 그 밖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#### 제6조(이의 심사)

- 1)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- 2)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'게재불가'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.
- 3)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.
- 4)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 전체가 검토하도록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,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.
- 5)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,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.

### 제7조(논문의 게재예정증명서)

- 1)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판정에 근거하여 최종 심사 결과를 논문 투고자들에게 통보한다.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.
- 2)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발급 요청은 심사에 따른 최종판정이 ‘게재가’ 혹은 ‘수정 후 게재가’를 받은 투고자로 제한한다.
- 3)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발급 요청이 접수되면 이에 대한 발급 승인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.

### 제8조(기타)

- 1)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『씨네포럼』이 소유한다.
- 2) 논문의 심사 및 편집·출판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재적위원 2/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.
- 3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.

### 제9조(개정)

본 규정은 『씨네포럼』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0조 (1) 본 규정은 201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(2) 개정된 규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(3) 개정된 규정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(4) 개정된 규정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